

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

(의안번호 제500호)

심사보고서

1998. 9. 29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8. 31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 : 1998. 9. 18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9. 29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(총괄) : 별임내역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를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정부의 사후 재정보고의 형태로서
-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고, 동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검토의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
- 기 심사과정을 토대로한 집행부의 견제측면에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, 위법성에 대하여 중점 진단(심사)하여 다음년도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감독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8. 9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